

[ 별지 서식 제 8 호 ]

##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에 대한 안내

---

■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,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■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및 통지 절차

- ①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FAX 송부 ( FAX : 051-991-0912 )
- ② 담당자 접수 ( ☎ : 051- 991- 0911 )
- ③ 접수확인
- ④ 삭제 또는 분리보관 등의 처리 ( 접수 후 약 7 영업일 내외 소요 )
- ⑤ 신청서 상의 요청방법으로 청구결과 안내

※ 붙임 :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1 부.

